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\*\*\*\*/ 전송(02)790-8911 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연구팀장 김선우[6576] 팀원 윤영섭[6580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11339호

시행일자 2023. 12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1호)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1호 (2023.12.01.)
- 3. 상기 호 관련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2호, 2023.11.24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고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## □ 주요내용

-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, '23.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
- 고시 제2023-187호(2023.10.10.) 중 오류 정정
- □ 시행일: 2024.01.01.(월)

# 붙임 : (제2023-231호)\_건강보험\_행위\_급여·비급여\_목록표\_및\_급여\_상대가치점수\_일부개정(3차개편\_추가). 끝.

## 대 한 의 사 협 회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# 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